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1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정재 · 안철수 · 김미애
최수진 · 추경호 · 김선교
김기현 · 서명옥 · 이달희
최보운 · 김상훈 · 정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이차전지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디스플레이

4. 청정수소 관련제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의약품(백신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재화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적용한다.

1.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④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제45조의2의 경정 등의 청구 및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용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차감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판매수량의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의35제7항의 개정규정(국가전략기술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공제)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u> <u>조세특례</u> <u>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을</u> <u>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① 제</u> <u>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u> <u>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u> <u>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u> <u>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u> <u>있는 내국인이 제2항 각 호의</u> <u>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u> <u>호의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u> <u>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u> <u>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u> <u>를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u> <u>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u> <u>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u> <u>제한다.</u> <u>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u> <u>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u> <u>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u> <u>기술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u>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이차전지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디스플레이

4. 청정수소 관련제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의약품(백신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재화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적용한다.

1.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④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제45조의2의 결정 등의 청구 및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해당 자산의 일부만이 제1항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용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차감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 생산수량의 보고, 판매수량의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산정, 세액공제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근로자, 연구원 및 기술인력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⑪ (생 략)

<신 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④ (생 략)

<신 설>

⑪ (현행과 같음)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제100조의35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위한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